

창원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가단1115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앤
담당변호사 오재훈, 최원준, 최진수, 손양곤, 정영덕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권오성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005,0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05,0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단30628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4.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522,617원 및 그 중 259,564,935원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2013. 4. 1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4. 3. 6.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 중 205,838,086원을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하였고, 잔존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C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24차전10180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24. 2. 26.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946,290원 및 그 중 53,726,849원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2013. 4. 1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24. 3. 15. 확정되었다.

나. 피고 A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9. 5. 29.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A와 자녀들인 E, F, G, C, H, 피고 B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3/15 지분을, C 및 피고 B를 포함한 6명의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2/15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11. 2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 A는 2019.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피고 A는 2023. 2. 10. 아들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23.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재산상태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2/15 지분 및 경남 산청군 I 답 998㎡의 1/5 지분 합계 14,600,000원 상당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160,000,000원 상당의 구상금채무가 존재하여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 성산구청 세무과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J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인 2/15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2/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질 당시 C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함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과 피고 A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이러한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증액된 결과 피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A는 80대의 노령으로 자녀들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 B은 모친인 피고 A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의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피고 A의 기여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또는 성립범위를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A의 기여분이 인정됨에 따라 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피고 A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행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는 C의 모친이고, 피고 B은 C의 형제로서 C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의 수익자 및 전득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23.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K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야 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82,538,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이후인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1,005,066원(= 82,538,000원 × 2/15, 원 미만 버림)이고, 이는 앞서 살펴본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보다 적으므로, 위 11,005,066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A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11,005,0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와 전득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1,005,0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선

별지

1)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설회한다.